

[별표 1] <신설 2010.6.8>

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·구역 및 체장(제17조 관련)

1.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

품명	학명	금지구역	금지기간
가. 은어	<i>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</i>	강원도, 경상북도	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
		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,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. 다만,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.
나. 연어	<i>Oncorhynchus keta</i>	전국	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
다. 빙어	<i>Hypomesus nipponensis</i>	전국	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
라. 쏘가리	<i>Siniperca scherzeri</i>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	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
	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

마. 열목어	<i>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</i>	전국	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
바. 참게 동남참게	<i>Eriocheirsinensis</i> <i>Eriocheirjaponicus</i>	강원도. 다만, 댐은 제외한다.	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사. 다슬기	<i>Semisulcospira spp.</i>	전국	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

2.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체장

품명	학명	포획·채취 금지 체장
가. 산천어	<i>Oncorhynchus masou masou</i>	20센티미터 이하
나. 송어	<i>Oncorhynchus masou masou</i>	12센티미터 이하
다. 쏘가리	<i>Siniperca scherzeri</i>	18센티미터 이하
라. 황복	<i>Takifugu obscurus</i>	20센티미터 이하
마. 참게 동남참게	<i>Eriocheir sinensis</i> <i>Eriocheir japonicus</i>	5센티미터 이하
바. 기수재첩	<i>Corbicula japonica</i>	각장 1.5센티미터 이하
사.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좁주름다슬기	<i>Semisulcospira coreana</i> <i>Semisulcospira gottschei</i> <i>Semisulcospira libertina</i> <i>Semisulcospira forticosta</i> <i>Semisulcospira tegulata</i>	각고 1.5센티미터 이하
아. 말조개	<i>Unio douglasiae</i>	각장 9센티미터 이하

※ 비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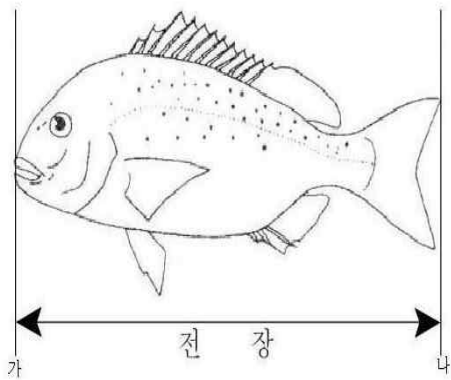
1.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(각장, 각고를 포함한다)은 부도와 같이 "가"와 "나" 사이의 직선거리를 잴 값으로 한다.

2.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(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쥔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)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.
3. 빙어,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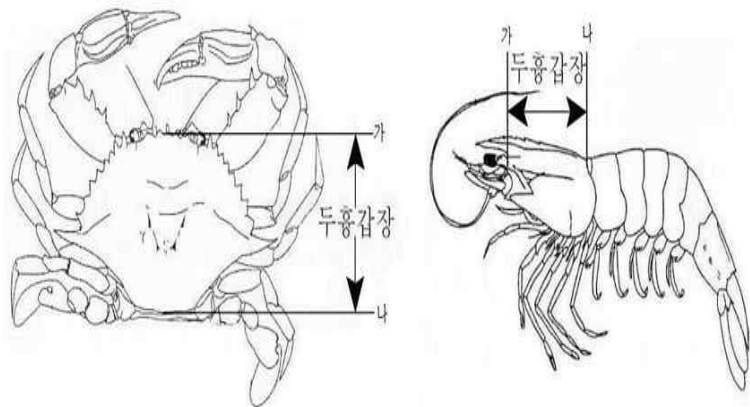
[부도]

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

[어 류]



[갑 각 류]



[패 류]

